

학교법인 상산학원

제312회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회의 소집 통지일 : 2024년 1월 25일
2. 회의 일시 : 2024년 2월 2일 14:00~15:00
3. 회의 장소 : 학교법인 상산학원 화상회의실(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0)
4. 참석 임원
 - 이사 : 이사장 홍상욱, 이사 신철순, 김성길, 이현구, 전창후, 최병선, 박세훈, 맹동준(8명)
 - 감사 : 박지원, 김용권(2명)
5. 관계자
 - 설립자 홍성대, 학교장 김명환, 교감 국중학, 교감 손성호, 행정실장 김연수, 법인실장 오동훈, 주무관 강정화(7명)
6. 회의 안건
 - 1) 교원(교장) 임용(안)
 - 2) 교원(정규교사) 임용(안)
 -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4) 사무직원 일반승진 임용(안)
 - 5) 상산고등학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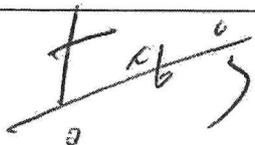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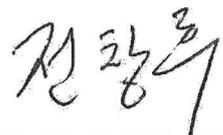
7. 회의 내용

법인실장 오동훈 : 성원 보고(이사 8명 중 8명 참석, 감사 2명 중 2명 참석)

이사장 홍상욱 : 회의 개최(성원이 되어 회의 개최를 선언하다(의사봉 3타)) 및 인사

(일주일 전 이사회 소집 통보 시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사회는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전화 회의록은 모든 임원에게 일주일 전 보내준 내용이기에 모두 확인해 보셨으리라 믿으며, 전화 회의록의 내용 중에 오자, 탈자, 정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승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간 서 명	홍상욱 이사장	전창후 이사	박세훈 이사
			

이 사 전창후 : 제311회 이사회 회의록을 우편으로 받아 살펴본 바, 사실과 다름없이 잘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 사 김성길 : 전창후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이 사 이현구 : 김성길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홍상욱 : 다른 의견 유무 확인하다.(이사 일동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제311회 이사회 회의록은 김성길 이사의 동의와 이현구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며,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 없이 접수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사봉 3타)

심의 안건 5건 중 제1호 안건 '교원(교장) 임용(안)'을 상정(의사봉 1타)하고, 오동훈 법인실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법인실장 오동훈 : 2024. 2. 29.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환 교장 후임으로 신임 교장을 임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중학 교감이 임용후보자로 제청되었으며, 임용 예정일은 2024. 3. 1.자로 임용 기간은 2024. 3. 1. ~ 2028. 2. 29.(4년)이라는 내용과 함께 제1호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2024년도 교장 자격인정 및 교장 자격 연수대상자로 교육청에 신청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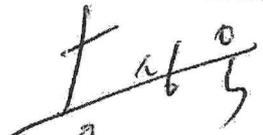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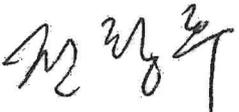
이사장 홍상욱 : 김명환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지난 4년 동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셨으며, 그 동안의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 김명환 교장 선생님은 이번 달 말일을 끝으로 임기가 완료되어 신임 교장을 임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용후보자로 제청한 국중학 교감은 우리 학교 3회 졸업생이며, 학년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입학관리부장, 교감을 역임하면서 학교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기에 임용후보자로 제청하였음을 부연 설명하고, 제1호 안건 '교원(교장) 임용(안)'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이 사 전창후 : 교장 임용후보자로 제청된 국중학 교감은 인격이나 애교심 및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되어 국중학 교감을 신임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이현구 : 전창후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홍상욱 : 다른 의견 유무 확인하다.(이사 일동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제1호 안건은 전창후 이사의 동의와 이현구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며,

	홍상욱 이사장	전창후 이사	박세훈 이사
간서명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1호 안건인 ‘교원(교장) 임용(안)’은 국중학 교감(1967.01.04.)을 「법인 정관」 제39조제1항에 따라 2024. 3. 1.자 신임 교장으로 임용(2024. 3. 1. ~ 2028. 2. 29./4년)하고, 2024년도 교장 자격인정 및 교장 자격 연수대상자로 교육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설립자 홍성대 : 2024. 3. 1.자 교장 임용예정자인 국중학 교감에게 모교 졸업생이 명문 사학인 상산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학교가 더욱 더 발전하고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신임 교사를 채용할 때 학문과 덕성을 함께 갖춘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다.

이사장 홍상욱 : 이어서 제2호 안건 ‘교원(정규교사) 임용(안)’을 상정(의사봉 1타)하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의 장으로부터 영어 과목 2명, 화학 과목 1명의 임용후보자가 제청되었으며, 제청 순위는 서류전형, 필기전형과 면접전형 및 실증수업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로 학교의 장이 제청한 임용후보자 중 영어 및 화학 과목에 대해 각 1명을 임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후 학교의 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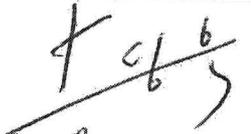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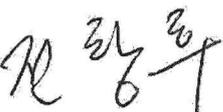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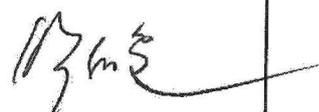
학교장 김명환 : 영어 및 화학 과목에 대해 총 6명의 실증수업을 실시하여 영어 과목은 2명, 화학 과목은 1명을 임용후보자로 제청하였으며, 과목별로 제청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이사장 홍상욱 : ‘교원(정규교사) 임용(안)’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이 사 박세훈 : 전형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으로서 영어 과목 제청 1순위자는 여러 학교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고 실증수업에서도 훌륭하게 잘하였음. 화학 과목 제청 임용후보자는 현재 타 학교에서 정규교사로 재직하고 있고 강의 실력 또한 뛰어났으며, 월등한 학생을 지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함. 따라서 위 2명은 우리 학교에 적격자로 생각되며, 학교 측 의견에 따라 제청(안) 순위대로 임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영어 과목은 제청 1순위자(구○혜)를, 화학 과목은 제청 후보자(김○원)를 임용하되, 차후 임용 포기, 결격 사유 등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제청(안) 순위에 따라 영어 과목은 2순위자(박○용)를 임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 사 이현구 : 박세훈 이사 의견에 동의하다.

이 사 신철순 : 이현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홍상욱 이사장	전창후 이사	박세훈 이사
간서명			

이사장 홍상욱 : 다른 의견 유무 확인하다.(이사 일동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제2호 안건은 이현구 이사의 동의와 신철순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2호 안건인 '교원(정규교사) 임용(안)'은 영어 과목은 제청 1순위자(구○혜)를, 화학 과목은 제청 후보자(김○원)를 임용하되, 차후 임용 포기, 결격 사유 등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제청(안) 순위에 따라 영어 과목은 2순위자(박○용)를 임용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이어서 제3호 안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의사봉 1타)하고, 오동훈 법인실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법인실장 오동훈 : 「법인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현재 법인 이사 8명 중 2명이 개방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나, 2024. 4. 2.자로 우리 법인 개방이사 2명(이현구, 최병선)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추천을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받고자 하는 사항임.

「법인 정관」 제20조의3에 의거 추천위원회는 상산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두며, 위원정수는 5명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명, 법인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여 구성된다는 내용과 함께 추천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다.

이사장 홍상욱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이 사 전창후 : 추천 위원으로 우리 법인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업무에 능통하신 박○훈 이사와 우리 법인의 감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상산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계신 엄○섭 회계사를 추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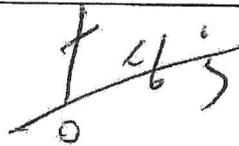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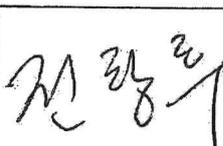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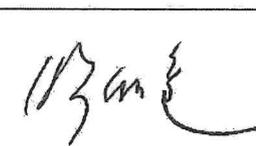
이 사 김성길 : 전창후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이 사 신철순 : 김성길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홍상욱 : 다른 의견 유무 확인하다.(이사 일동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제3호 안건은 김성길 이사의 동의와 신철순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3호 안건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박세훈 이사와 엄상섭 상산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이어서 제4호 안건 '사무직원 일반승진 임용(안)'을 상정(의사봉 1타)하고, 김연수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간서명	홍상욱 이사장	전창후 이사	박세훈 이사
			

행정실장 김연수 : 법인 정관상 일반직원 7급 정원은 2명이나, 현원은 1명으로 일반승진이 가능함. 이번 일반승진(일반직 교육행정 8급→7급) 임용대상자로 제청한 박○석 주무관은 교비회계 예·결산, 일반지출, 기숙사, 환경·위생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5. 1. 1.자 9급으로 임용되어 2020. 3. 1.자에 8급으로 일반승진하였음. 2024. 3. 1.자로 법령, 정관, 일반직원 인사규칙 및 지침에 따라 7급 일반승진 최저연수(3년), 근무기간(5년) 및 교육훈련 이수 기준시간(120시간)을 모두 충족하여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이타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이기에 교육행정 7급 일반승진 임용대상자로 제청하였음을 설명하다.

이사장 홍상욱 : ‘사무직원 일반승진 임용(안)’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이 사 이현구 :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박세훈 : 이현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홍상욱 : 다른 의견 유무 확인하다.(이사 일동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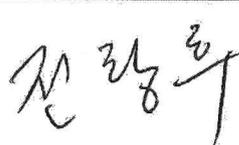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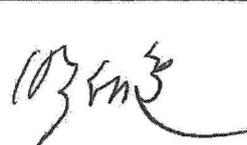
그럼 제4호 안건은 이현구 이사의 동의와 박세훈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4호 안건인 ‘사무직원 일반승진 임용(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이어서 제5호 안건 ‘상산고등학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의사봉 1타)하고, 국중학 교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교 감 국중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법규 개정에 따른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행 지침 및 업무 매뉴얼의 수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존 학칙에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내용 중 이미 학교 내 하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해당 규정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개정안을 준비하였음을 설명하다.

이사장 홍상욱 : ‘상산고등학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이 사 김성길 : 상산고등학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변호사인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검토해 준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 사실 개정 내용이 많아 오늘 회의에서 세심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회의서류가 이미 일주일 전에 전달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되며,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홍상욱 이사장	전창후 이사	박세훈 이사
간서명			

이 사 전창후 :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회의서류 15쪽 현행 4장(교육과정·수업일수 및 시험)과 개정안 제4장(교과·수업일수·고사·교외체험학습)에서는 '시험'을 '고사'로, 17쪽 현행 제12조(고사)와 개정안 제15조(교과학습 평가)에서는 '고사'를 '교과학습 평가'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개진하다.

교 감 국중학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 1. 18. 공식 출범하였으며, 학교 규칙 개정안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나, 정식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고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하다.

이 사 최병선 : 현행 제12조와 개정안 제15조 내용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다.

교 감 국중학 : 현행 제12조는 크게 정기고사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이며, 개정안 제15조는 교과학습 평가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고,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등을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이 사 전창후 : 현행 제12조 내용이 삭제되어도 되는지 질문하다.

교 감 국중학 : 정기고사의 구분은 상위법령에도 나와 있지 않고 평가의 횟수 등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의거 학교 교과협의회에서 계획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이 사 이현구 : 개정안 제7조(휴업일)에 대한 내용 중에 기존의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일 휴업'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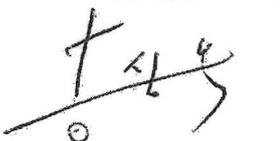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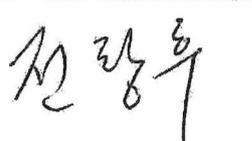
이사장 홍상욱 : 앞서 말씀하신 현행 제4장(개정안 제4장), 현행 제12조(개정안 제15조) 및 현행 제14조(개정안 제7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 사 전창후 : 이사장 의견에 동의하다.

이 사 박세훈 : 전창후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홍상욱 : 다른 의견 유무 확인하다.(이사 일동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제5호 안건은 전창후 이사의 동의와 박세훈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며,

간서명	홍상욱 이사장	전창후 이사	박세훈 이사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5호 안건인 '상산고등학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
하고, 현행 제4장(개정안 제4장), 현행 제12조(개정안 제15조) 및 현행 제14
조(개정안 제7조)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그럼 회의록 간서명을 위한 대표 3인을 호선해 줄 것을 주문하다.

이 사 이현구 : 홍상욱 이사장과 전창후 이사, 그리고 박세훈 이사를 추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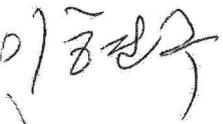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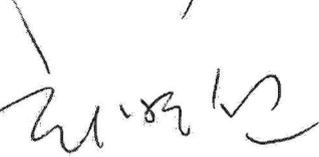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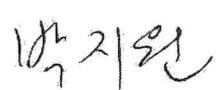
이 사 맹동준 : 이현구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이 사 김성길 : 맹동준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홍상욱 : 다른 의견 유무 확인하다.(이사 일동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간서명 호선은 맹동준 이사의 동의와 김성길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어 위 3인이 간서명 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사장
이 회의 마무리 인사를 하다.(제312회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의사봉 3타))

작성자: 주무관 강정화

이사장 홍상욱		이 사 신철순	
이 사 김성길		이 사 이현구	
이 사 전창후		이 사 최병선	
이 사 박세훈		이 사 맹동준	
감 사 박지원		감 사 김용권	

간 서 명	홍상욱 이사장	전창후 이사	박세훈 이사
		